

가처분 신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신청]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가처분 신청요건, 가처분 신청방법 및 절차, 가처분의 효력, 가처분 집행취소 신청,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가처분 취소신청 등 가처분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처분 신청	1
1. 가처분개관	5
1.1. 가처분의 개념	5
1.1.1. 가처분의 개념	5
1.1.2. 가처분 절차 개요	6
1.2. 가처분의 관할	10
1.2.1. 가처분의 관할	10
1.3. 가처분 관련 법제	12
1.3.1. 가처분 관련 법제	12
2. 가처분신청준비	14
2.1.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14
2.1.1. 가처분의 신청 요건	14
2.1.2. 가처분의 당사자	17
2.2. 가처분 신청서 작성	19
2.2.1. 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19
2.3. 신청비용 납부	23
2.3.1. 인지 첨부	23
2.3.2. 송달료 예납(豫納)	25
2.3.3.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첨부	27
3.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31
3.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31
3.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31
3.1.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35
3.1.3.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 (예: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등)	39
3.1.4.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42
3.1.5.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	46
3.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48
3.2.1.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48
3.2.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51
3.3.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54
3.3.1.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54
3.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57
3.4.1.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57
3.4.2.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신청	60
3.5.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63
3.5.1.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63
3.5.2. 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67
3.6.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70
3.6.1.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70
3.6.2. 이사행위금지가처분 신청	73
3.6.3.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	75
3.6.4. 주식에 관한 가처분 신청	77
3.7.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78
3.7.1.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	79
4.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81
4.1. 가처분 신청 심리	81

4.1.1. 가처분 신청 심리	81
4.2. 가처분 재판	82
4.2.1. 담보제공명령	82
4.2.2. 가처분 명령	86
4.2.3.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87
5. 가처분집행	91
5.1. 가처분집행	91
5.1.1. 가처분집행	91
5.2. 가처분집행취소	94
5.2.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취소	94
5.2.2. 공탁금 회수	96
6. 가처분채무자구제	99
6.1. 이의신청	99
6.1.1.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99
6.2.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102
6.2.1.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102
6.2.2.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	105
6.2.3.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108

1. 가처분개관

1.1. 가처분의 개념

1.1.1.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압류(假押留)와의 구별 ▶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假押留)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잠정적인 법률관계 형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구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Q. A가 B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B에게서 소유권이전예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B가 급등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는 상황에서 매수인 A가 할 수 있는 보전처분은 무엇인가요? A.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처분 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
Q. A가 교통사고로 B를 부상케 하였는데 A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B는 A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B의 응급치료를 위해 A로부터 치료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이 경우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할법원은 가처분 심리 및 재판에 따라 B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여 A에게 일정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1.1.2. 가처분 절차 개요



가처분 신청준비

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제30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신청비용 납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 (상한액은 50만원)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

가처분 신청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물의 인적 (주관적)·물적 (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지시키려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목적물	가처분 종류	신청목적 및 신청이유
부동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인적 (주관적)·물적 (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가 필요한 경우
	단행가처분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목적물	가처분 종류	신청목적 및 신청이유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등록이 가능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유체동산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유지
채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금전지급가처분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본안 소송확정 전에 금전채무를 못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침해금지 가처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상사사건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본안승소 전에 급박한 사정이 있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이사행위금지가처분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의 행위 유지(留止)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고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임시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한 가처분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의 효력에 대한 다툼 해결을 위한 의결권행사금지·허용가처분 및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가처분 신청 심리 및 재판

가처분 신청 심리

가처분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

280조제1항, 제301조 및 제304조).

가처분 재판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그 제공 방법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122조).

법원은 가처분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게 되고,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제1항 및 제2항).

가처분집행

가처분집행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가처분집행취소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가처분 채무자 구제

이의신청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및 제301조).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및 제301조).

채무자는 ①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및 ③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는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① 가처분에 의해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해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해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제1항 참조).

1.2. 가처분의 관할

1.2.1. 가처분의 관할

가처분 소송의 관할

전속관할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 여기서의 다툼의 대상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다툼의 대상보다 넓은 의미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가처분 해야 할 유체물, 무체물을 모두 포함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Ⅳ).

예컨대, 건물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곳,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항자선임, 영화 또는 극장예의 출연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루어지는 곳, 즉 회사의 영업소, 영화촬영지, 연극상영지 등이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됩니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6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제1항).

※ 가처분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이나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용어해설▶

○ 전속관할(專屬管轄)

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말합니다.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합의관할(合意管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 전에 할 것이고 제소 후에는 관할의 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 변론관할(辯論管轄)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하거나 할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게 됩니다.

※ 관할권 없는 법원에 대한 신청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가처분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대법원 1964. 4. 11. 선고, 64마66 판결](#)),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 위반의 흠이 치유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가처분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 (移送)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였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됩니다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본안의 관할법원

◀법령용어해설▶

○ 본안 (本案)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해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여야 할 필요는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됩니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본안이 계속된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2심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제2심 법원 (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1조).

본안 사건에 대한 항소가 있었지만 그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신청 당시에 본안이 계속되었던 제1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71. 9. 18. 선고 71다1532 판결).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는 제1심 법원이 가처분 사건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대법원 2002. 4. 24. 선고 2002즈합4 판결](#)).

※ 본안의 계속 법원은 가처분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한 그 법원이 비록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도 무방합니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선택재판적이 인정되는 청구여서 여러 개의 법원이 경합될 경우에는 그 모두가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므로 그 중 어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도 되며, 나중에 본안을 다른 법원에 제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참조).

그 밖에 관할에 대한 규정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데 법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부 법관 전원의 합의를 신속히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이 급박히 요구되고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12조).

1.3. 가처분 관련 법제

1.3.1. 가처분 관련 법제

「민사집행법」

보전처분

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의 하나로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제301조). 다만,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쳐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준용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그 밖의 재판 관련 법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가처분 신청서 등 각종 신청 서류에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 .

「지방세법」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 .

2. 가처분신청준비

2.1.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2.1.1. 가처분의 신청 요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 요건

피보전권리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다툼의 대상이란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물건 또는 권리로 해석되므로, 유체물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식재산권,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광업권이나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정되지 않은 종류채권이나 금전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대체물이라도 채권자나 집행관이 집행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대법원 1999. 5. 13.자 99마230 결정](#)).

※ 종류채권이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물(不特定物)’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잠실의 105㎡ 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서울 잠실에 있는 105㎡의 아파트라면 위치에 관계없이 특정되지 않은 아파트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류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잠실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까지 지정되어야 특정되었다 할 수 있고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소유의 물건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9410 판결](#)).

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다툼의 대상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받으려면 그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내용, 주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권의 이행기가 현실적으로 도래(到來)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한부, 조건부청구권도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567 판결](#)), 단순한 기대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다1826 판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

법원의 형성판결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청구권도 피보전권리의 적격을 갖습니다. 예컨대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 제기예 앞서 장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여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실제적 청구권의 장래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소송상 청구는 가능하나 집행이 불가능한 책임 없는 채무(예, 부집행 특약이 있는 경우) 등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다툼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보전의 필요성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은 보전할 청구권의 목적물을 훼손·이전·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 √ 현상의 변경은 장래에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와 이미 그 염려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어느 경우나 그러한 위험이 현재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 √ 현상의 변경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생겨야 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자력이 감소한다든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권의 강제실현, 즉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은 권리의 실행이 불능인 경우는 채무자, 그 밖의 사람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멸실·훼손·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권리의 실행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은 불능으로 볼 수 없으나 그 목적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 √ 집행권원의 집행곤란 여부는 특정물의 현재 상태의 변경(예컨대 목적물 훼손·파괴하는 객관적, 물리적 변경, 목적물 양도, 저장권·전세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 등) 여부에 따라 판단되고, 채무자의 일반 책임재산의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타인의 토지를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점유경작하고 있는 이상 출입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68. 5. 14. 선고 67다2777 판결](#)) .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다면 그 토지에 공작물설치와 수목벌채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보전의 필요가 있고 또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다2100 판결](#)) .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동업계약을 부인하고 단독으로 동업재산인 고사목(枯死木)을 벌채한다면 이를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그 점유의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해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67. 4. 4. 선고 66다2641 판결](#))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요건

피보전권리

권리관계가 현존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임시의 지위를 구하려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다통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1966. 12. 9.자 66마516 결정).

보통 다통이 있는 권리관계를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그 권리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로 권리자의 지위를 주는 것이므로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해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권리관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그 내용이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신분적 권리라도 좋고, 또한 그 재산적 권리는 물권, 채권 또는 지식재산권도 가능합니다.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도 포함됩니다. 금전채권도 현재의 위험,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부양료,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 같은 정기적·반복적 채무, 그 밖의 금전의 지급채무도 포함됩니다.

강제집행절차, 비송사건절차, 체납처분에 대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에 다통이 있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다통이란 권리관계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권리보호가 요구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관계가 부인되는 것,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것 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처럼 형성의 소가 제기될 것이 요구되는 것 등이 이에 속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예▶

- ①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하면서 계경부동산에 침입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출입금지 또는 채권자의 점유사용의 방해금지를 명하는 것 (명도단행가처분)
- ②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생활비의 지급을 명하는 것 (치료비지급가처분)
- ③ 특허권침해에 의하여 채권자가 신용거래처를 잃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행사 또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 (판매금지가처분)
- ④ 해고무효를 이유로 하여 종업원인 지위확인 소를 제기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궁을 구하기 위하여 임시로 급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 (임금지급가처분)
- ⑤ 이사선임결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가 직무를 집행하여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함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 (이사직무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⑥ 경계선을 넘어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 금지, 또는 인근 건물의 균열이 심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됩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라는 사유는 예시 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그 외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라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가처분의 필요성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2.1.2. 가처분의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의 개념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자기의 이름으로 가처분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호칭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87조 및 제292조 참조).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및 제285조 참조).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 취소신청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서 등에 기재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집행단계에서의 이해관계인일 뿐 보전소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및 대리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및 대리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51조 이하).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및 제87조).

유용한 법령정보 1

Q.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가처분 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나요?

A.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가처분 소송의 대리권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따라서 본안소송의 위임장 사본에 본안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

Q.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870 판결](#)). 다만, 가처분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처분도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당사자적격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전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당한 채권자가 되고,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가는 묻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정당한 채권자가 되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처분 소송의 참가 및 승계

참가

가처분 소송절차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자는 보조참가의 방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자기 이름으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법령용어해설▶

◆ 보조참가

소송계속 중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를 하는 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타인 간의 소송의 결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하고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독립당사자참가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 그 소송의 원고·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하여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에

속하거나 또는 그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될 제3자가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때로는 3면 소송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 공동소송참가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3조). 즉, 공동소송참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간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는 종전 당사자의 어느 한 쪽과 공동소송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라 합니다.

승계

가처분 신청 전 승계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가처분 집행 전 승계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에 대하여 또는 승계인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명령 집행 후 승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양수인 또는 승계인으로서 가처분 등기의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자신이 피보전권리의 양수인임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및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참고).

2.2. 가처분 신청서 작성

2.2.1. 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당사자 표시

채권자·채무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당사자 표시는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그 밖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은 아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채 권 자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 ○○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찾기 쉬운 생활법령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서울 ○○구 ○○동 333-33 ○○빌딩 111호

채 무 자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 ○○빌라 203호 (우: 000-000)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 권 자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 ○○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 ○, 모 ○ ○ ○

서울 ○○구 ○○동 ○○-○○ ○○빌딩 111호

채 무 자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 ○○빌라 203호 (우: 000-000)

법인의 경우 ① 법인명칭(또는 상호), ② 주 사무소(또는 본점), ③ 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 ④ 대표자, ⑤ 법률상 대리인 ⑥ 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합니다.

채 권 자 주식회사 ○○ (법인등록번호)

서울 ○○구 ○○동 ○○○-○○ (우: 000-000)

대표이사 ○ ○ ○

채 무 자 의료법인 ○○ (법인등록번호)

서울 ○○구 ○○동 ○○-○○ ○○빌딩 203호 (우: 000-000)

소관 ○○병원 원무과

대표자 이사장 ○ ○ ○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법인등록번호)

서울 ○○구 ○○동 ○○-○○ ○○빌딩 111호

대표이사 ○ ○ ○

소관 ○○동지점

서울 ○○구 ○○동 ○○-○○호

채무자의 현주소지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또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채 무 자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종로구 명륜동 ○○-○○ ○○빌라 203호 (우: 000-000)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 ○○빌딩 1003호

◀ 기재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되도록 법인명칭, 주 사무소,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등의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명칭 옆 괄호 안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것이 법인의 특정을 위해 좋습니다.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가처분 신청서 작성

다툼의 대상이 있는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목적물, 목적물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제1호).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예시 1: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금 000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예시 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00. 0. 0. 대금 124,5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청의 취지

권리보전을 위한 내용 적시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을 통해 구하려는 그 내용을 말하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1: 부동산(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자동차)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예시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예시 3: 토지출입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의 이유

신청이유 적시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①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②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예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00. 0. 0. 이 사건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소유권자입니다.
2. 채무자는 아무런 권리나 권한 없이 위 건물의 2층 50㎡ 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에게 위 건물 점유부분의 명도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만약 채무자가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줄 경우 위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그 밖의 기재사항

법원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74조)

소명방법의 표시(「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작성한 날짜(「민사소송법」 제274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사소송법」 제274조)

덧붙인 서류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74조)

※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개별 가처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유형별 가처분 신청례](#)> 부분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신청비용 납부

2.3.1. 인지 첨부

인지의 첨부

신청서별 인지액

가처분 신청이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구 분	근거조문	인지액
가처분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10,000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3조	10,000원
가처분 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소장, 재항고장	「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제소명령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 287조제1항	1,000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제287조제3항	10,000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10,000원
특별사정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7조	10,000원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9조	1,000원
담보취소신청서 및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25조	1,000원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민사소송법」 제162조	500원

인지의 구입

수입인지 납부 및 구입

가처분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우체국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찾기 쉬운 생활법령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수입인지 판매소

※ 구입한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 또는 신청서 첫 장 앞면 우측 상단에 붙입니다.

전자수입인지의 구입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2.3.2. 송달료 예납(豫納)

송달(送達)

송달이란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에서 정한 방식에 좇아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을 받은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와 더불어 이를 보관함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처분 결정의 송달

가처분의 신청,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송달료 예납

송달료 예납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송달료규칙」 제2조).

◀법령용어해설▶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송달료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경우 예납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찾기 쉬운 생활법령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송달료 = 왕복 통상우편료 (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 + 등기수수료 2,400원 + 특별송달수수료 2,000원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가처분 사건 (가처분 신청 포함)	3회/8회	신청인, 상대방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 (집행취소는 제외) 사건	8회	신청인, 상대방
그 밖의 민사신청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2회 (단,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 × 1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	3회 (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 (집행취소는 제외) 사건은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처분 신청 시 예납할 송달료

-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 ◎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심문기일이 필요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송달료를 납부한 채권자는 송달료 납부서 1통을 가처분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송달료 납부 방법 및 송달료납부서 등의 교부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납부서 등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을 교부 받음
수납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이를 납부인이 출력함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를 갈음함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 등으로 납부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 등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 받음

※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를 확인하세요.

※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송달료 추가 납부

이미 납부한 송달료가 해당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료의 추가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30조 및 제32조).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려는 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6조제1항).

2.3.3.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첨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또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 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근거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단서 및 제1호마목
선박 (소형선박포함) 등기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저작권 등 등록	1건당 3,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1건당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입니다 (「지방세법」 제27조제1항) . ◆ 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따름이 원칙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 주택 이 외의 건축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면적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850,000원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6조) ※ 그 밖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릅니다. ※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http://www.realtypr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klac.or.kr/)-법률정보-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에서 건물가액산정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건물시가표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다만, 자동차 등록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참조) .

납부방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를 방문하여 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건네주고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5조 및 제152조제1항).

구 분	납세지	근거 조문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법」 제 25조제1항제1호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선적항 소재지	「지방세법」 제 25조제1항제2호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지방세법」 제 25조제1항제3호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지방세법」 제 25조제1항제4호
저작권 등 등록	저작권자 주소지	「지방세법」 제 25조제1항제10호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소재지	「지방세법」 제 25조제1항제6호

◀지방세 납부▶

지방세 납부는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일부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www.wetax.go.kr/\)](http://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영수증 제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원본)을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 가처분 신청의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처분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방법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2부 제출, 500원 인지 첨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2.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 밖에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보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증지 첨부

대법원수입증지 (부동산에 한함)

가처분집행 시 부동산 등기축탁이 필요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제외)을 신청하려는 자는 가처분집행을 위해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4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제12호).

◀ 제출 방법 및 납부액 ▶

※ 구입한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처분할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을 가처분하는 경우에는 4,000원,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처분하는 경우에는 8,000원,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에는 4,000원의 증지를 구입·제출해야 합니다(「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3.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3.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3.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목적물

가처분목적물의 특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제291조, 제301조 및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설정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6조 참조). "미등기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91조 참조).

1.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1.부터 3.까지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 제291조 및 제301조).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제291조 및 제301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2호 및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23999 판결](#))

부동산의 일부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3호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90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기재례: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금 000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00시 00구 00동 00 제4동
철 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2.75㎡
2층 152.75㎡
3층 152.75㎡
4층 152.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00시 00구 00동 00 대 7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층 411호 72.8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70분의 377 대지권. 끝.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첨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제10조, 「[민사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송달료 납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등록면허세 납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의 1천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계산한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단서 및 제1호마목).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 집행을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 사용할 1필지당 4,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4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제12호).

※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거용 건물: 개별주택공시가격

비주거용 건물: 시가표준액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및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서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보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및 제20조).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예: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법령용어해설▶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출처: 대검찰청 법률용어사전(www.spo.go.kr)>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건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언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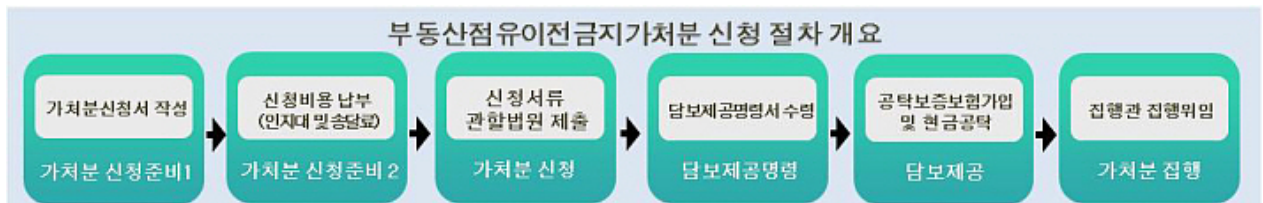
유용한 법령 정보 1
Q. A의 소유인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였으나, B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A.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점유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목적물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係爭)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 사진 등의 그 목적물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목록의 표시에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의 표기가 다를 경우 실제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재례>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가액의 표시 : 금 7,5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00. 0. 0.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00시 00구 00동 00 제4동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2.75㎡ 2층 152.75㎡ 3층 152.75㎡ 4층 152.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00시 00구 00동 00 대 7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층 411호 72.8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70분의 377 대지권. 끝.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

<기재례>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첨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록세·교육세 납부 및 증지 첨부는 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보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및 제20조).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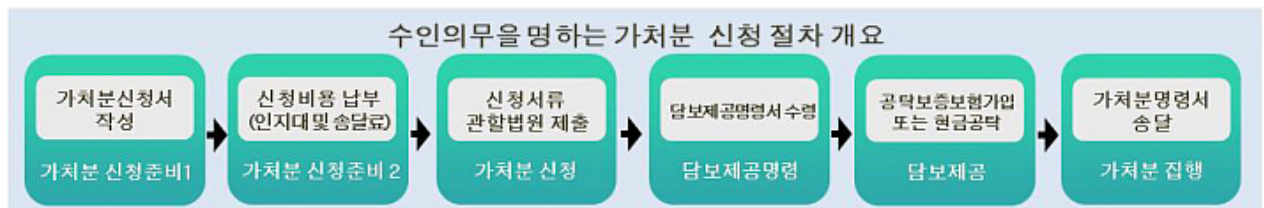
3.1.3.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 (예: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등)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이란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행하는 가처분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 구체적인 예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신청인(채권자)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채무자)을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 필요한 경우 별지도면 또는 별지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㉔ 부분을 통로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또는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㉔ 부분의 통로에 통행함을 방해하는 철책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신청인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의 경우>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㉔ 총계부분을 수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신청인이 위 수리공사를 함을 허용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건물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찾기 쉬운 생활법령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첨부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은 심문기일을 필요적으로 열어야 하는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이므로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4.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경우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려는 경우

건축이 완성된 건물의 철거를 금지하려는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려는 경우 등

유용한 판례 정보

◇ 굴착공사로 인한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에 따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 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이상의 심굴 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나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봅니다(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주거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위 교실 복단을 벽으로 쌓은 사실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사생활의 은밀이 침해될 염려가 배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4 판결).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신청인(채권자)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채무자)을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 가해건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채무자로 되며, 보통은 공동채무자로 하여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신 청 인 ○ ○ ○

서울 ○○구 ○○동 111-11 ○○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서울 ○○구 ○○동 333-33 ○○빌딩 111호

피신청인 1. ○ ○ ○

서울 ○○구 ○○동 222-22 (우: 000-000)

2. ○○건설 주식회사

서울 ○○구 ○○동 333-33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기재례>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가액 : 금 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신청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별 지]

목적물의 표시

○○시 ○○구 ○○동 ○○

대 000.0㎡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신청취지 기재례>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하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공사금지(중지)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첨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 10조, 「[민사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있게 준비)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5.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적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 인도(명도) 단행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예(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명도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한 두 세대의 명도거부로 말미암아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명도를 둘러싼 분쟁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장래의 건물이용계획을 세워두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을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채무자가 당초의 건물 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례: 건물의 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철거·수거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임시로) 인도하라.
 2. 채무자가 이 명령 송달일부터 ○일 내에 위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별지 제1목록은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제2목록은 철거 및 수거할 물건·가건물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첨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 「[민사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인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별지목록(목적물 부분의 도면 등 포함)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3.2.1.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은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는 부동산에 준하는 한편 이동성이 있어 동산의 성질을 갖고 있어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청구권의 기초가 같다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제301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

가처분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제2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재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210조제1항 및 제211조).

자동차의 경우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사용본거지(차고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소형선박의 경우 건설기계에 준하여 표시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첨부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

※ 자동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1건당 15,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건설기계 등록면허세는 1건당 10,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1건당 2,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 소형선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소형선박 등록면허세는 15,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3,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자동차 등 가처분신청서 1부

별지 목록 6부 이상 (여유 있게 준비)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소형선박등록원부)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처분할 자동차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따라서 가처분할 대상인 자동차 등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 (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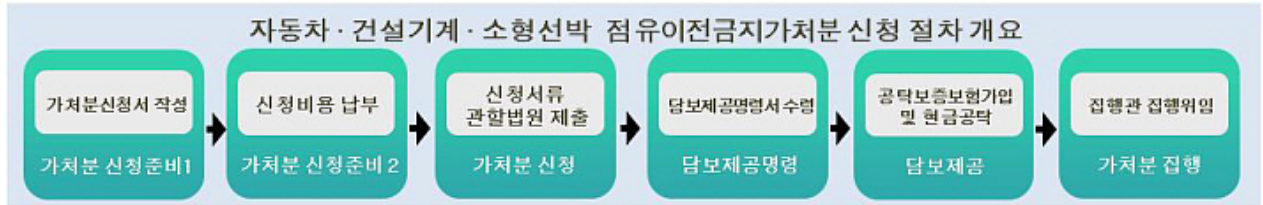
3.2.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은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는 부동산에 준하는 한편 이동성이 있어 동산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청구권의 기초가 같다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자동차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제301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자동차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

가처분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제2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여선원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재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210조제1항 및 제211조).

자동차의 경우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사용본거지(차고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소형선박의 경우 건설기계에 준하여 표시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선박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첨부

자동차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자동차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자동차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자동차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자동차 등 가처분신청서 1부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자동차등록원부(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소형선박등록원부)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자동차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자동차 등 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처분할 자동차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따라서 가처분할 대상인 자동차 등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3.3.1.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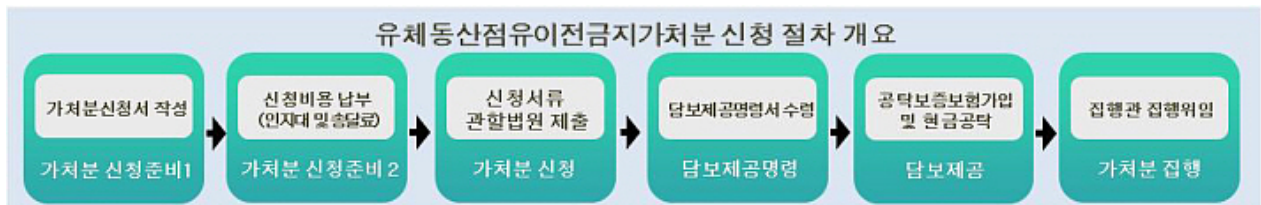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법령용어해설▶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입니다.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처분 할 유체동산은 특정(물건의 명칭 등)하고 그 소재지를 가처분 신청서에 명시하고, 그 가액의 산출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1.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1. 목적물의 가액 : 금 000원
1. 피보전권리의 요지 : 소유권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

[별지 목록]

동산목록

1. 오디오세트 : 000 SCA-3840
2. 000 LED TV : LED-000HD 모델 1대
3. 에어컨 : 000 스탠드 에어컨 0000 1대
4. 00피아노 1대
5. 00드럼세탁기 : 11kg 1대
6. 그림 산수화 2점, 무궁화 1점
7. 책진열장 2EA, 진열장 1EA

집행장소 : 00시 00구 00동 00-00. 끝.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첨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 「[민사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1부

별지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처분할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따라서 가처분할 대상인 유체동산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3.4.1.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민법」 제449조제2항 단서), 이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그 밖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채권양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원래의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추심금지와 동시에 그 채권의 제3자에의 처분금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이 이중 양도되어 양수인들 사이에 채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금지하거나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의 상대방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의 추심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채권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 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채 권 자 ○ ○ ○
서울 ○○구 ○○동 111-11 ○○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서울 ○○구 ○○동 333-33 ○○빌딩 111호
채 무 자 ○ ○ ○
서울 ○○구 ○○동 222-22 ○○빌라 203호 (우: 000-000)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시 ○○구 ○○동 ○○ (우: 000-000)
대 표 이 사 ○○○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 이 경우 계쟁 채권의 채무자가 가처분의 신청 **채권자**가 되고 계쟁채권의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가 됩니다. 또한 가처분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목적 채권의 표시

가처분할 채권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 279조제1항제2호).

<예시> 목적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별지 1] 금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반환청구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다툼의 대상인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처분·추심금지 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첨부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1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

별지목록 6부 이상 (여유 있게 준비)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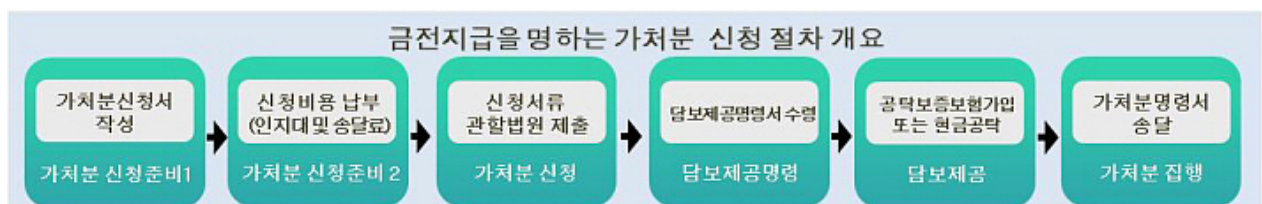
3.4.2.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신청

금전지급가처분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부양 등)의 존부에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하거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주로 이용됩니다.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 작성

찾기 쉬운 생활법령

신청서 작성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피보전권리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신청인(채권자)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채무자)을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정액지급형(치료비 등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예시: 정기지급형(생계비 등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 매월 0일에 금 000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예시: 결합형>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000원 및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 매월 0일에 금 000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치료 종결 후 본안소송 계속 중 장래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중 일부의 일시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납부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금전지급가처분은 심문기일을 필요적으로 열어야 하는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이므로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지급해야 할 금액의 산출근거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치료비를 임시로 지급받아야 하는 근거로써 신체감정서 등) 사본 1부

※ 금전지급가처분 사건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3.5.1.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처분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조).

법원은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및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조제1항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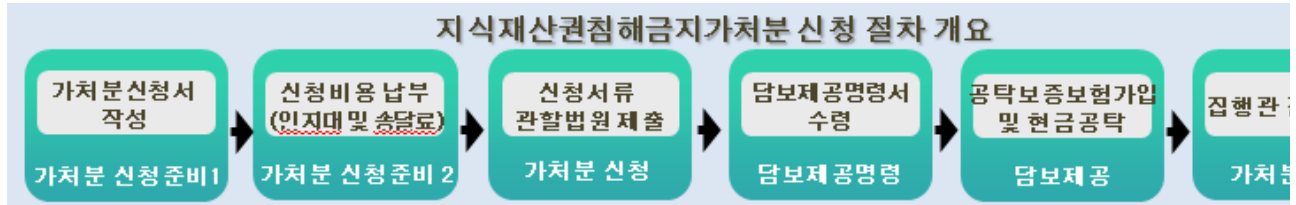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조제3항).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재요 민사집행Ⅳ)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입니다.

채권자가 침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게 특허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즉 현재 제조준비, 생산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 유무가 더욱 신중하게 판단·결정되며,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는 경우나 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됩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가처분 채권자

지식재산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채권자 적격이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1항 및 「실용신안법」 제30조).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일부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가처분 채무자

침해금지가처분의 상대방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특허법」 제126조제1항 및 「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따라서 정당한 권원(權原) 없이 업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물건 또는 방법을 실시하거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실시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가 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소송대리인

변리사는 특허권침해소송이나 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실무이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자의 특허관리인도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처분 신청서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신청인(채권자)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채무자)을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침해당한 목적물의 도면 또는 사진과 그 설명서를 첨부하여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영역의 저촉은 물론 균등영역의 저촉에 있어서도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이른바 ‘전요소주의’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에 해당하거나 대응하는 피신청인의 침해물품의 저촉부분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례: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도면 및 설명서 기재의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위 제품과 그 반제품 (위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제1목록 표시의 각 포장을 부착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제품,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수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별지 제1목록 표시의 각 포장을 부착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완제품 및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의 경우에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용기, 선전광고물, 포장으로부터 위 상표를 말소하고 위 물건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저작권 (서적의 경우) 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서적을 인쇄, 제본,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위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저작권 (음악) 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음악을 수록한 씨디 (CD),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엠피 (MP) 3 파일, 엠디 (MD)를 제작,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첨부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지식재산권 등록원부, 공보, 각종 확인서 등)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2. 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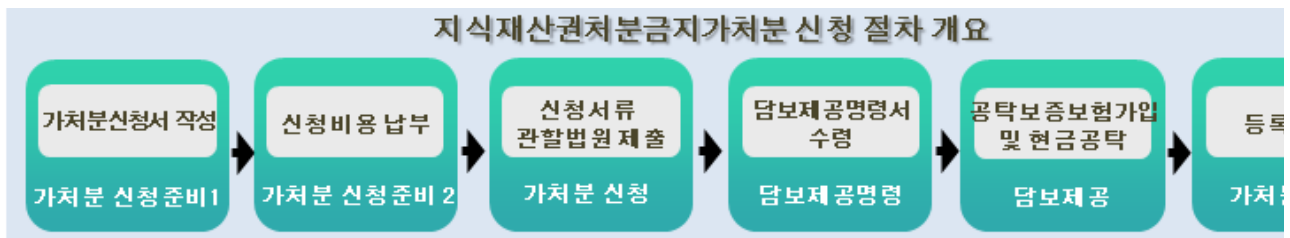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6조 및 제213조제1항).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목적물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초본을 붙여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신청취지 기재례: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특허권가처분신청서 및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첨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당 3,000원의 등록면허세와 600원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및 제151조제2호).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참고).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초본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공보, 각종 확인서 등)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3.6.1.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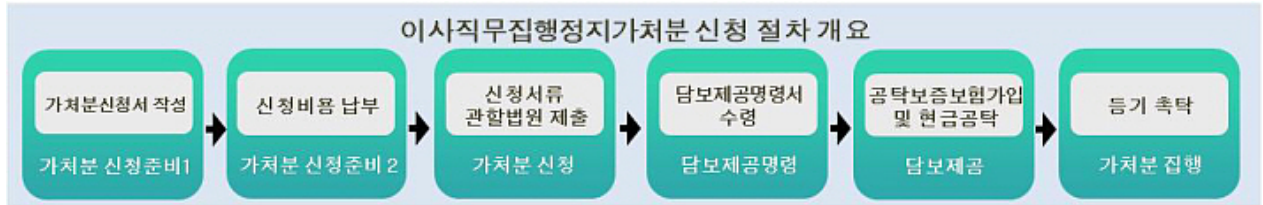
「민법」에 따른 법인 등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6조 참조).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신청 가능하고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7. 1. 10. 자 95마837 결정](#)).

관할법원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은 다툼의 대상이라 할 유체물 또는 무체물이 없으므로 사실상 본안의 관할법원만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 등의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전속관할합니다(「상법」 제376조제2항, 제380조, 제381조제2항, 제385조제3항 및 제186조).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신청의 취지, ③ 신청의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⑥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하에서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상법」 제376조), 무효나 부존재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임기가 만료된 이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적격이 부정되나,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선임이 있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 등의 사유로 적법한 후임이사가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의 임기 만료 이사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해당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습니다([대법원 1982. 2. 9. 80다2424 판결](#)).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례>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의 신청 외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신청 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또는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다음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000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이사 직무대행자

000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첨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상법」 제407조제3항) 해당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8,040원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및 제151조제2호).

※ 이사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사항이지만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제1호).

※ 이사 등에 대한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개별법에 따릅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민법」 제52조의2)

주식회사의 이사(「상법」 제407조제3항), 감사(「상법」 제415조), 청산인(「상법」 제542조제2항)

유한회사의 이사(「상법」 제567조), 감사(「상법」 제570조), 청산인(「상법」 제613조제2항)

합명회사의 사원(「상법」 제183조의2), 청산인(「상법」 제265조)

합자회사의 사원과 청산인(「상법」 제269조)

상호회사의 이사(「보험업법」 제59조제2항), 감사(「보험업법」 제59조제3항), 청산인(「보험업법」 제73조)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2. 이사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이사행위의 유지청구권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위 유지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그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신청의 취지, ③ 신청의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⑥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하에서는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의 신청인(채권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상법」 제402조).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신청취지 기재례>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이사회에 승인없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이사인 회사에 양도, 저당권설정, 임대 그 밖에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첨부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찾기 쉬운 생활법령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행위금지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록세·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소수주주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3.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 가처분 신청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고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아예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및 제381조).

※ 예: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정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

이에 따라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후에도 그 효력발생을 결의취소 또는 무효의 소 본안판결 시까지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신청의 취지, ③ 신청의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및 ⑥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하에서는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신청취지 기재례: 총회개최금지(정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00. 0. 0.에 소집한 2000. 0. 0. 10:00부터 채무자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00. 0. 0.에 소집한 2000. 0. 0. 10:00부터 채무자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항 내지 제○○항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및 소명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은 주주총회 개최 일정에 임박하여 신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명에 가까운 소명(매우 자세한 정도의 신청이유와 그 증명자료)을 필요로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납부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4. 주식에 관한 가처분 신청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권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해야 하나, 집행단계에서 그 주권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기재례: 주권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회사를 지칭)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주식의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가처분 신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신청취지 기재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 2. 〇〇주식회사는 2000. 0. 0.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1. 〇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1. 〇〇〇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취지 기재례: 의결권행사 허용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 〇〇주식회사는 2000. 0. 0.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유지청구권 및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4조) .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신청취지 기재례>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00. 0. 0.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 금〇〇원의 보통주식 〇〇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상은 주식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서 특이한 내용만을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3.7.1.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 증권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유가증권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현재의 소재지를 밝혀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기재례: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권리행사 또는 배서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은 그 발령과 동시에 가처분명령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처분재판 정보를 송달함으로써 집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제296조제2항 및 제301조).

※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7조의2).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례는 다음의 각각의 경우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근저당권부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보상금처분·추심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서](#)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

※ 이상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특이한 피보전권리 및 그 대상만을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4.1. 가처분 신청 심리

4.1.1. 가처분 신청 심리

신청사건의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

가처분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 보정명령 송달 등으로 인한 시간절약을 위해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구두로 보정을 명하고, 즉시 보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의 실질적 심사

변론의 요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및 제301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 가처분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 ▶

가처분에 대한 이의의 재판(「민사집행법」 제286조 및 제307조)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 제310조 및 제288조제1항제1호)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 제310조 및 제288조제1항제2호)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 제310조 및 제288조제1항제3호)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재판(「민사집행법」 제307조)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4조)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면심리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에 의해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입증과 그 대응

가처분 절차에서의 신청 이유 등은 증명 대신 소명(疏明)으로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및 제301조).

소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9조제1항).

소명이 없거나 부족할 때에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 소명 대신 행한 선서 후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1조).

※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2조).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http://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용어해설▶

소명(疏明):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합니다.

4.2. 가처분 재판

4.2.1.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찾기 쉬운 생활법령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80조제2항·제3항).

법원은 통상 가처분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처분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담보제공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이하 “공탁보증보험증권”이라 함)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제2항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4조제1항).

담보액의 산정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그 산정기준은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담보액 산정의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보전처분의 종류	산정기준	목적물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유체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1/10	1/3 (경락받은 사람은 1/5)	1/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1/20	1/5 (리스회사는 1/10)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신청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3조제1항).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 가처분 신청서의 신청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구를 적고 판사의 허가결정이 있는 등본을 지참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재례>

신 청 이 유

<중 략>

4. 이 사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명령 후 따로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의 허가결정이 있는 등본을 지참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자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카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금000원의 담보제공을 명령받았는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채권자 ((인) 또는 서명)

00지방법원 귀중

[illegible]

위 신청을 허가함.

20 . . .

판사 (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공탁보증보험가입)

보험가입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증서 제출 허가서를 지참하여 (주)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www.sgic.co.kr)를 방문하여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계약자격 (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탁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납부 (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납입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입보험료 = 공탁금액(보증금액) × 보험요율

√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국가기관·금융기관, 상장기업, 개인·일반회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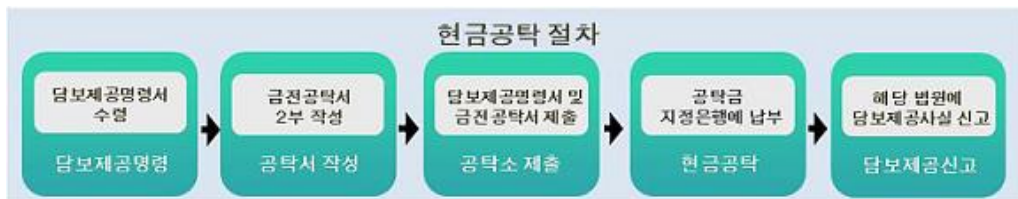
담보제공신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담보제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험증권 원본과 함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 담보제공신고에 있어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원에 보낼 때 편의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담보제공 신고서
사 건 2000카단000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 권 자 000
채 무 자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별첨과 같이 담보제공을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1. 담보제공명령문사본 1통
2.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1통
2000. 0. 0.
채권자 0 0 0 (인)
00지방법원 민사신청과 00단독 귀중

현금공탁



금전공탁서 제출 및 공탁

법원으로부터 현금공탁명령을 받은 경우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를 작성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담보제공명령서와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1항).

담보제공신고

공탁을 한 채권자는 수리된 공탁서 사본(원본 지참)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고 담보제공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담보제공신고에 있어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원에 보낼 때 편의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담보제공 신고서

사 건 2000카단000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 권 자 000

채 무 자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별첨과 같이 담보제공을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1. 담보제공명령문사본 1통

2. 금전공탁서(재판상의보증) 원본대조필 1통

2000. 0. 0.

채권자 0 0 0 (인)

00지방법원 민사신청과 00단독 귀중

공탁금 회수

※ 공탁금 회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집행-가처분집행취소-공탁금 회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2. 가처분 명령

가처분 명령

가처분신청 재판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81조제1항) .

가처분 재판의 고지

결정서 송달

다음에 대한 결정은 결정의 이유 등을 적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03조의3 및 제203조의4) .

가처분의 신청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의 취소신청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 담보제공명령, ②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③ 가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1조제3항)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처분 집행은 그 재판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집행착수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입니다.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가처분 명령의 효력

가처분 방법

법원은 가처분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게 되고,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제1항 및 제2항).

가처분의 방법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대법원 1956. 3. 24. 선고 4288민상477 판결), 피보전권리의 종류와 성질, 보전의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등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처분의 효력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86조제5항,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446조).

가처분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처분 신청 기각·각하결정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경과나 즉시항고 기각·각하재판에 의하여 확정되고,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효력발생시기

가처분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당초의 가처분 명령이 고지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가처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4.2.3.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부적법에 따른 각하(却下)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신청의 이유가 부족함에 따른 기각(棄却)

찾기 쉬운 생활법령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 301조 및 제280조제2항),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21 판결).

◀법령용어해설▶

각하(却下):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각(棄却):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3항 및 제301조).

신청이 배척된 경우 불복절차

즉시항고(即時抗告)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제281조제2항 및 제301조).

즉시항고장 접수

◀ 즉시항고장 기재례 ▶
즉시항고장 항고인 (채권자) 〇〇〇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 (우편번호 〇〇〇-〇〇〇) 피항고인 (채무자) ◇◇◇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 (우편번호 〇〇〇-〇〇〇) 위 당사자간 〇〇지방법원 〇〇카단〇〇〇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2000. 0. 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인은 위 결정을 2000. 0. 0. 송달받음)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가처분 신청서에 적은 신청이유 부분의 사실관계 기재 2.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 한 본 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기각은 부당하므로 이 건 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결정문 1통 1. 항고장부분 1통 2000. 0. 0. 위 항고인 (채권자) 〇〇〇 (서명 또는 날인) 〇〇지방법원 귀중

항고심은 원심에 이어 계속하므로 제출할 호증(증거서류)은 원심에 이어서 번호를 붙입니다. 즉 원심에서 제출한 마지막 증거서류가 "소갑제10호증"이라면 항고심에서 추가 제출할 증거서류는 "소갑제11호증"부터 시작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9조).

즉시항고하려는 자는 즉시항고장 접수 시 2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항고장에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즉시항고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5회분

※ 즉시항고 시 납부해야 할 인지 및 송달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 의해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6항).

재항고(再抗告)

가처분 사건 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5. 가처분집행

5.1. 가처분집행

5.1.1. 가처분집행

가처분신청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5조).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개시의 요건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있는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92조제1항).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92조제2항). 다만,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것)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7. 16. 선고 82마카50 판결](#)).

가처분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92조제3항).

집행방법

발령법원이 집행하는 경우

구분	집행 방법	세부 사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촉탁	법원사무관 등은 가처분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보를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처분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 기입(「민사집행법」 제 293조제2항 및 제3항)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촉탁	법원사무관 등이 해당 행정관청에 가처분의 기입등록 촉탁(「민사집행규칙」 제215조, 제210조제1항 및 제 211조)
채권에 대한 가처분(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송달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처분 재판정보를 별도의 집행신청 없이 가처분 발령과 함께 제3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
인도(명도) 단행가처분	부동산 명도·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제244조).
금전지급가처분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	채무자가 금전지급가처분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가처분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주의 집행기간 내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기 촉탁	법원사무관 등이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 촉탁(「민사집행법」 제 306조)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은 압류의 방법을 통해 집행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4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외에(「민사집행규칙」 제159조) 특히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은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 236조제1항).

※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집행관이 집행하는 경우

집행위임

집행위임이란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석하에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붙이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고지함으로써 행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집행방법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집행위임은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강제집행신청서에 가처분명령정본(법원 결정문 원본 2부)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위임을 하면 채권자는 일정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제1항). 그 비용은 해당 집행관사무소에서 바로 알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및 철거 또는 수거단행가처분의 경우 집행위임의 방법을 통해 집행을 실시합니다.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거나(예: 건축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수인의무를 명하는(예: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것과 같이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은 그 재판의 고지나 송달에 의해 바로 효력이 생기고 별도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집행의 효력

가처분집행의 효력 일반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임대·전대·임차권양도, 사용대차 등) 이전이나 객관적(목적물의 동일성 상실)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387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

※ 그 밖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3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채무자가 반복적·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과 같이 채무자의 반복적·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할 경우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또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物的) 상태를 남기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아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공작물의 철거를 집행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및 「민법」 제389조제2항).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物的) 상태를 남기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체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 전 채무자 심문은 필수적입니다(「민사집행법」 제262조).

5.2. 가처분집행취소

5.2.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취소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 신청

집행취소(해제)의 신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처분집행을 취소(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취소(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신청서 작성

집행취소신청서에는 집행취소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를 간단히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취하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취소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00카합000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하여 채권자는 2000. 0. 0. 가처분결정을 얻고 그 집행을 하였으나, 금번에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되어 위 가처분의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해제신청서(채권자)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법률서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납부

※ 채권자에 의한 집행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등록세 등)을 예납해야 하나, 인지는 불일 필요가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집행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를 납부해야

찾기 쉬운 생활법령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은 해당 목적물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1건당 6,000원	1건당 1,200원
자동차	1건당 15,000원	면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가처분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 납부방법 ▶

송달료 납부방법은 우표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풀로 붙이지 말고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의 [등기신청 정액등록세납부서 작성란](#)에서 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집행취소(집행해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제시하고 등록세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대법원수입증지는 법원 구내은행에서 구입하여 풀로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고정 후 신청서 상단에 끼워서 제출합니다.

※ 가처분집행취소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취소 신청 접수(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권자의 집행취소는 해당 가처분을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취소(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이 집행하는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해당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집행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과 같이 단순한 불행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은 그 재판의 고지나 송달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집행취소의 효과

집행취소의 결과 채무자는 가처분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5.2.2. 공탁금 회수

현금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가처분 신청의 취하 및 각하

신청인(채권자)은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신청인(채권자)은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보는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보와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2부)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 확정증명원 작성례 ▶
확정증명원 사 건 2000카담0000 담보취소 신 청 인 000 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귀원 2000카담000호 담보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 동 담보취소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0. 0. 위 신청인 000 (서명 또는 날인) 00지방법원 귀중

※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을 받으려는 신청인(채권자)은 확정증명원 2부를 작성하여 1부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 본안 전부 승소 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및 공탁금 회수청구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http://www.klac.or.kr/>)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으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 및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경우 신청인(채권자)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1,500원의 인지(담보취소신청·확정증명원 각 1,000원·500원)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신청인(채권자)은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보와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필요한 담보취소신청서·담보취소동의서·즉시항고권포기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http://www.klac.or.kr/>)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회수청구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http://www.klac.or.kr/>)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권리행사최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신청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권리행사최고를 통해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2,500원의 인지(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확정증명원 각 1,000원·1,000원·500원)와 5회분(권리행사최고 3회분, 담보취소신청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5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신청인(채권자)은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보와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및 공탁금 회수청구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http://www.klac.or.kr/>)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가처분채무자구제

6.1. 이의신청

6.1.1.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에 대한 이의

채무자의 이의신청 및 피보전권리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辯論終結時)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같은 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81다카990 판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이의사건은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법원은 가처분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처분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移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4조 및 제301조).

이의신청 자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처분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보전처분 신청의 소송대리인도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및 제76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동시에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79조 따른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이사는 가처분 후의 직무집행은 할 수 없지만 가처분의 당부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이의신청

신청시기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때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 채권자 승소의 본안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이의신청서의 제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이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가 채권자 및 채무자 2명이라 할 경우: 2명 × 1회 송달료 × 8회)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별표 1).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법률서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첨부 및 송달료 예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효력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및 제301조).

다만,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이의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1항·제2항 및 제301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3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서가 송달된 후에 이의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4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의 심리와 재판

심문기일 통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및 제301조).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2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및 제301조).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및 제301조).

결정(決定)과 판결(判決)

- ◇ "결정"이란 임의적 변론 또는 서면심리를 근거로 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써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의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찾기 쉬운 생활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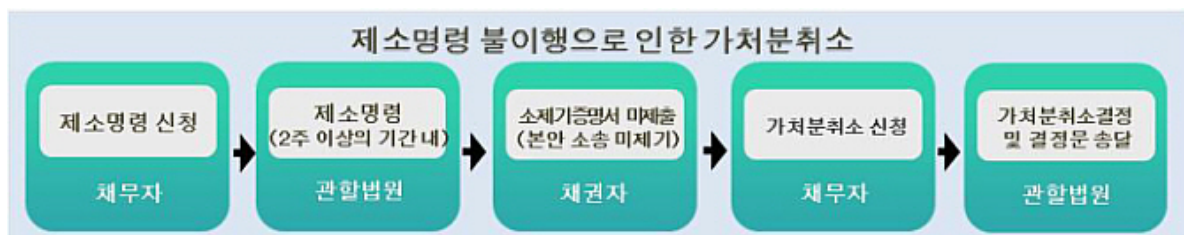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및 제301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6.2.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6.2.1.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제소명령

제소명령의 신청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및 제301조).

※ 이 신청의 채무자는 가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절차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원의 대한민국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 우측상단에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신청서 작성과 신청비용을 완납한 자는 가처분 결정법원에 제소명령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소명령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http://www.klac.or.kr>) 법률서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지 첨부 및 송달료 예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이므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고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조제2항).

제소명령 등에 대한 불복

제소명령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 또는 너무 장기간의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일반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소명령의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항고할 수 없고,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소제기증명서 등의 제출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소송계속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취소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301조).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이후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라도 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소제기 증명서류의 제출 후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4항 및 제301조).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처분취소(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

취소신청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301조).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가처분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5호).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 기재례 ▶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신청인 (채무자)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신청인 (채권자)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귀원 2000카단○○○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귀원에서 2000. 00. 00. 결정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당사자 사이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귀원 2000카단○○○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의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더 이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2000. 0. 경 귀원에 제소명령신청 (2000카기○○○제소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귀원이 발령한 제소명령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견 가처분취소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2000. 0. 0.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인지 첨부 및 송달료 예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301조).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9조 및 제310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가처분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5항).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및 제301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6.2.2.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

가처분취소 사유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사정변경

채무자는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는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1호 및 제301조).

◀ 사정변경 해당 여부 ▶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사실([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057 판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실체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354 전원합의체판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취하하였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268 판결](#))

본안소송이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며,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사정변경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및 제301조).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별표,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사정변경(피보전권리의 소멸의 경우)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 신청취지 기재례 ▶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2000카단○○○○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00. 0. 00.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인지 첨부 및 송달료 예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처분취소

담보제공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2호 및 제301조).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그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담보제공방법에 관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 심리 및 재판-가처분 재판-담보제공명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유에 의한 가처분취소

본안의 소 제기 기간

가처분이 집행된 뒤 채권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 및 제301조).

가처분의 집행시기	기간	근거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민사집행법」 부칙(제6627호) 제2조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민사집행법」 부칙(제7358호) 제2조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민사집행법」 부칙(제7358호) 제1조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처분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및 제301조).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집행법」 제19조제1항제1호,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심리와 재판

관할법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및 제301조).

심리와 재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은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1항·제3항 및 제301조).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2항).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6항 및 제301조).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효력(집행정지 및 원상회복)

찾기 쉬운 생활법령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취소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 및 제310조).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7항,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447조).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및 제301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6.2.3.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제1항).

사정변경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담보의 제공이나 특별사정의 존재 등은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60 판결).

특별사정

특별사정이란

"특별사정"이란 ① 가처분에 의해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해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해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보안소송에서의 청구의 내용, 해당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 금전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해 발령된 출입금지등가처분(대법원 1997.

3.14. 선고 96다21188 판결)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피보전권리가 담보물권(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547 판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방해배제청구권(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127 판결)인 가처분

그 밖에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목적물인도청구권이나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담보물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행사에 의한 목적물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과 같이 그 종국적 목적이 금전적 가치의 파악에 있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금전보상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경우

피보전권리가 온천수의 용수권(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586 판결) 또는 의장권인 경우(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334 판결)

그 밖에 공사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이나 경영권분쟁상태에서의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주·사채발행금지가처분 등과 같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금전보상의 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며 위 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반드시 공익적 손해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1210 판결).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

취소신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및 제301조).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별표,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법원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移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4조 및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의 취하

취소신청 취하

채무자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취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1항·제2항 및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취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3항 및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가 송달한 후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이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4항 및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심리 및 재판

심문기일 통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및 제307조제2항).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2항 및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대한 재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및 제307조제2항).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및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효력(집행정지 및 원상회복)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취소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 및 제310조).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제307조 및 「민사소송법」 제447조).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및 제30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